

제2021-50호 2021년 3월 17일(수)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청주환경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757호	2021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돌산읍 임포~죽포간 도로확장공사)	3
○ 여수시 공고	제2021-758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학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경관녹지, 주차장 조성)	4
○ 여수시 공고	제2021-759호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5
○ 여수시 공고	제2021-764호	2021년 제1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	6
○ 여수시 공고	제2021-774호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
○ 여수시 공고	제2021-778호	도로지정공고(화양면 용주리 473)	25
○ 여수시 공고	제2021-77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1-781호	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	29
○ 여수시 공고	제2021-783호	공시송달공고(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30
○ 여수시 공고	제2021-789호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31

기 타

회 람								
--------	--	--	--	--	--	--	--	--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여수시 돌산읍 임포~죽포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2021. 2.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17.

여수시장

1. 사업명 : 여수시 돌산읍 임포~죽포간 도로확장공사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519-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2. 26.)
5. 공고기간 : 2021. 3. 17. ~ 2021. 3. 31.(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여수시 시청동 1길 23(061-659-4063)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강*균	사정토지	
2	김*창	인천시 중구 신흥동 1가3*	거소불명
3	정*국	여수시 오림동 40*-2번지	토지소유자(사망)
4	박*규	사정토지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주차장)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2.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17.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여수 학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주차장) 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선원동 185-2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장미아파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정승미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2. 26.)
5. 공고기간 : 2021. 3. 17. ~ 2021. 3. 31.(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전남 여수시 장성1길 18-1 (061- 692- 2328)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박재한	여수시 쌍봉면 선원리 146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2.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17.

여수시장

1. 사 업 명: 모사금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여수시 오천동 341-9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4. 공 고 내 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2. 26.)
5. 공 고 기 간: 2021. 3. 17. ~ 2021. 3. 31.(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여수시 시청동1길 23(061-659-4067)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김삼*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9*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2.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불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17.

여수시장

1. 사업명: 서교동 중앙교회~다락카페 소방도로 개설공사
2. 사업의 위치: 여수시 서교동 717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여수시장
4. 공고내용: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2021. 2. 26.)
5. 공고기간: 2021. 3. 17. ~ 2021. 3. 31.(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 장소: 여수시청 도로과, 여수시 시청로 1(☎061-659-4066)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 주소	반송 사유	비고
1	박○업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길 **	폐문부재	소유자
2	김○심	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로 **	폐문부재	소유자
3	장○영	전라남도 여수시 한재로 ***	폐문부재	소유자(사망)
4	김○길	전라남도 여수시 서교*길 **	폐문부재	소유자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3. 17.

여 수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에 따른 자연 휴양림 시설사용료 제도개선 권고로 사용자와 갈등을 완화하고
-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협업으로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대상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등이 자연휴양림 시설이용시 불편함을 최소화
-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반환시 사용자 중심의 환불 기준 마련(안 제8조, 별표 3)
 - 환불처리 절차 기준 신설, 위약금 면책 기준 구체화 등
- 자연휴양림 입장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기준 정비(별표 2)
 - 일부 누락된 감면대상 추가 및 면제대상자 전부 열거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조항 신설(안 제11조)
-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시설사용료 증액(별표 1)

3. 관련 법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1. 3. 17. ~ 4.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6일까지 여수시장(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처 : 여수시청 산림과

(59683, 전남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망마경기장 1층)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659-5851),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여수시청 산림과(☎061-659-46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3.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4.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제2조제2항 중 “신복리 산391번지”를 “대복길 160”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매주”를 “성수기를 제외한 매주”로 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성수기에 여수시민에게 숙박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별표 2·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1. 입장료 기준

구 분		기준	이용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권	어른	1명/1일	1,000	800	
	청소년	1명/1일	800	500	
	어린이	1명/1일	500	300	

가. “어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및 시간	비 고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숲속의 집	A형(20㎡)	1동/1박	70,000	60,000	50,000	2명	
	B형(34㎡)	1동/1박	100,000	80,000	60,000	4명	
	C형(55㎡)	1동/1박	120,000	100,000	80,000	6명	
	D형(68㎡)	1동/1박	150,000	130,000	110,000	8명	
산림문화 휴양관	A형(39㎡)	1실/1박	100,000	80,000	60,000	4명	
	B형(77㎡)	1실/1박	160,000	140,000	120,000	10명	
	세미나실(116㎡)	1실/4시간	150,000	130,000	90,000	56명	오전/오후
카라반	17㎡	1대/1일	110,000	90,000	70,000	4명	
야영장 (야영데크)	16㎡	1개소/1일	20,000	15,000	10,000		
	24㎡	1개소/1일	30,000	25,000	20,000		
	35㎡	1개소/1일	40,000	35,000	30,000		
	41㎡	1개소/1일	45,000	40,000	35,000		
	80㎡	1개소/1일	100,00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 자동차가 아닌 승합·화물자동차	1대/1일	3,000	3,000	3,000		
	대형	1대/1일	5,000	5,000	5,000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제8조 관련)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및 주차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 제2항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연중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군인	면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	면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에 소속된 8개 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및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를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지자	면제	
	국가유공자 등	면제	

가.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 집, 산림문화 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금의 5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공휴일 전날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비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금 환급	

※ 비교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 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일 경우로 한정된다.
- 「소비자보호법」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u> 2. <u>“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u> 3. <u>“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의 전일(前日)을 말한다.</u> 4. <u>“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u>
<p>제2조(구성 및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 략)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u>신복리 산391번지</u> 일원에 둔다. 	<p>제2조(구성 및 위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대복길 160</u> -----.
<p>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편익시설 : 야영장, 주차장 및 <u>관리사무소</u> 3. · 4. (생 략) 	<p>제3조(시설의 범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관리사무소 등</u> 3. · 4. (현행과 같음)
<p>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매주 화요일</u>. 다만, 화요일이 공 	<p>제4조(휴관일 등)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성수기를 제외한 매주</u> -----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3. (생략)

② · ③ (생략)

제8조(환불 처리)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이용 신청)

① ~ ③ (생략)

<신설>

-----.
-----.

2.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환불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
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
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사
용료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그 지
연기간에 따라 사용료에 연 100분
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
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 수수료 등 반환할 때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시장이 부담
한다.

제11조(이용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에게 산림
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숙박
시설 중 2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중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1. 일반 기준

가. ~ 타. (생 략)

2. 입장료 기준

표(생 략)

<신 설>

3.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료		기준 인원 및 시간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숲속의 집	A형 (20m)	60,000	50,000	2명
	B형	80,000	60,000	4명

⑤ 시장은 성수기에 여수시민에게 숙박 시설 중 1개실을 예약 개시 7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의 시설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1. 일반 기준

가. ~ 타. (삭 제)

1. 입장료 기준

표(현행과 같음)

가. “어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한다.

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한다.

2.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사용료	기준 인원 및 시간			
		성수기	비수기		
			주말	주중	
숲속의 집	A형 (20m)	70,000	60,000	50,000	2명
	B형	100,000	80,000	60,000	4명

	(34㎡)				
	C형 (55㎡)	100,000	80,000	6명	
	D형 (68㎡)	130,000	110,000	8명	
산림문화 휴양관	A형 (39㎡)	80,000	60,000	4명	
	B형 (77㎡)	140,000	120,000	10명	
	세미 나실 (116㎡)	130,000	90,000	56명	
카라반	17㎡	90,000	70,000	4명	
야영장 (야영 데크)	16㎡	15,000	10,000		
	24㎡	25,000	20,000		
	35㎡	35,000	30,000		
	41㎡	40,000	35,000		
	8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차 동차가 아닌 승합 화물차	3,000	3,000		
	대형	5,000	5,000		

	(34㎡)				
	C형 (55㎡)	120,000	100,000	80,000	6명
	D형 (68㎡)	150,000	130,000	110,000	8명
산림 문화 휴양관	A형 (39㎡)	100,000	80,000	60,000	4명
	B형 (77㎡)	160,000	140,000	120,000	
	세미 나실 (116㎡)	150,000	130,000	90,000	
카라반	17㎡	110,000	90,000	70,000	10명
야영장 (야영 데크)	16㎡	20,000	15,000	10,000	56명
	24㎡	30,000	25,000	20,000	4명
	35㎡	40,000	35,000	30,000	
	41㎡	45,000	40,000	35,000	
	80㎡	100,000	80,000	65,000	
주차장	승용차 및 대형차 동차가 아닌 승합 화물차	3,000	3,000	3,000	
	대형	5,000	5,000	5,000	

[별표 2]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별표 2]

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감면 요율	비 고
입장 료 및 주차 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7 제2항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연중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군인	면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	면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에 소속된 8개 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 성군 및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 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를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유자	면제	

<신 설>

구분	감면대상	감면 요율	비 고
입장 료 및 주차 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 7 제2항제3호부터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연중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군인	면제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을 이용하는 사람	면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에 소속된 8개 시군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 성군 및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남해군·하 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를 위하여 휴양림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전라남도 우수자원봉사자 마일리지증 소유자	면제	
	국가유공자 등	면제	

가.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
상 여수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
한다.

나.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
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다.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
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의무
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라.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

	<p><u>한다. 이하 같다.</u></p> <p>1) 「<u>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u>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p> <p>4)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5) 「<u>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6)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p> <p>7)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2. 시설이용료 감면기준</p>	<p>8)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다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2. 시설<u>사</u>용료 감면기준</p>

구분	감면 대상	기준	감면 요율	비 고
숲속의집 · 산림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6급	요금의 3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신 설>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및 제10조 관련)

구분	감면 대상	기준	감면 요율	비 고
숲속의집 · 산림문화휴양관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 주중에 한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요금의 30% 할인	
	국가유공자 등	요금의 50% 할인		
		지역주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1가정1실에 한함)	요금의 30% 할인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제9조 관련)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 공휴일 전날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4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6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의 9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90% 공제 후 환급

시기	내용	반환기준		
		주말· 공휴일 전날	평일	
성수기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2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4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 의 6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 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 의 90% 공제 후 환급	총 요금 의 80% 공제 후 환급

<u>기후변화 및 천재 지변 그 밖에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u>	(생략)
--	------

<u>사용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없이 예 약시설의 사용이 불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u>	(현행과 같음)
--	----------

※비고

※비고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일 경우로 한정된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양면 용주리 473번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 고
계				79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양면 용주리	476	19.75	4	79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여 수 시 장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말소일자 : 불임참조
3. 공고기간 : 2021. 3. 17. ~ 4. 1.(15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불임참조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불임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 허가민원과 건축물관리팀(☎061-659-4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17.

여 수 시 장

[붙임]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내용

연번	대지위치	대장상소유자		건축물대장 현황				말소 일자
		성명	주소	구분	구조/지붕	용도	연면적 (㎡)	
1	적량동 1214-1	양만*	적량동 1214-1	1층/1동	brick/ 슬레이트	주택, 점포	59.1	2021. 1. 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문건설업체 폐업 공고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라 신고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폐업 처리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여 수 시 장

1. 폐업대상 업체

상 호	영업 소재지	폐업대상 건설업종 (등록번호)	법인번호	폐업일자	폐업사유
(유)부경개발 (정*준)	여수시 안심산길31(안산동)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여수2014-09-09)	206214-00060**	2021.3.17.	사업포기

2. 공고 기간: 2021. 3. 17.~ 2021.3. 31.(15일)

3. 공고 장소: 여수시 홈페이지 및 시보

4. 기타

본 신고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 등록말소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1. 2. 26.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서 정본을 공시송달 합니다.

2021. 3. 17.

여 수 시 장

1. 사업명 : 고소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2. 사업의 위치 : 여수시 고소동 636-4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여수시 시청로 1)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1. 2. 26.)
5. 공고기간 : 2021. 3. 17. ~ 2021. 3. 31.(15일간)
6.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여수시 시청로 1(061-659-4159)
7. 공시송달 대상자

번호	성명	송달주소	비고
1	박*철	전라남도 순천시 비봉2길22 ***동 ****호(조례동 **아파트)	
2	김*자	경남 밀양시 내일동 4**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입증요청제’의 실효성 확보 및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 기존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7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2조)
 -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 안전제출 (안 제3조)
 - 규제개혁위원회 안전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예비심사 및 규제 심사 (안 제4조~5조)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 규제 여부 결정 및 중요규제 심사에 관한 규정
- 개선권고 등 (안 제6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대한 사항 신설

- 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안 제7조~8조)
 - 기존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재검토 및 심사 규정 신설
- 규제의 등록 (안 제9조)
 - 자치법규 규제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의견수렴, 규제의 공포 (안 제10조~제11조)
 - 규제입증요청제 근거 마련 및 규제업무 공포 내용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기획예산과장)
- 전자우편 : wsp312@korea.kr
- 팩 스 : (061) 659-5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기획예산과 (전화 061-659-344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안건 제출) ①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대상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완료한 안건은 조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규

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규제 심사)** 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등록) ①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조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수렴) 위원회는 시민들이 제출한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
의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여수시 000조례(규칙)(안)

제 출 자	000과장 000
제출년월일	20 . . .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구분					
	신설		강화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0000국(소) 0000과 직급, 성명					
4. 근거법령 등						
5.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6. 규제 존속 기한과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시 사유					
7. 규제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제 ○ 신설(강화) 규제 					

II.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배경과 원인)
- 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규제의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자체심사의견서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	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4. 자체심사 의 견 (규제 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의 제목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과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				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 내용	(조례/규칙/시행규칙 명)					
당 초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신규 건의과제인 경우 미기재)					
재검토 결 과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일부수용	<input type="checkbox"/> 중장기검토	<input type="checkbox"/> 수용곤란		
추진 일정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등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과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팀 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자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 정 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p><근거규정></p> <p><주요내용></p> <p><존치 필요성></p>		
추진일정			